##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8. 7. 16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9조와 「공무원 고충처리 규정」 제3조의4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 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소속 교육공무원 중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풀(Pool)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이되도록 한다.
  - ②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고,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 성하되, 회의개최 시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
  - 2. 대학에서 법학, 행정학, 심리학, 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 - 3.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  -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 위원은 보직기간동안, 민간위원과 임명직

위원은 2년으로 하고, 민간위원의 경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- 1.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
- 2.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
- 3. 회의록 작성과 보관
- 4.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②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, 회피로 인해 지정된 위원이 회의에서 배제된 경우 외에는 최소 5명이상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) ① 이 규정에 따른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근무조건 : 봉급,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, 근무환경,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
  - 2. 인사관리 : 승진, 전직,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
  - 3. 기타 신상문제 : 성별, 종교별,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 대우,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,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
  - ② 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,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,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

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.

- 제7조(고충심사의 청구)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(이하 "청구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  - 1. 주소, 성명 및 생년월일, 소속 및 직급(직위)
  - 2. 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
- 제8조(보완 요구) 위원회는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흠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접수통지 및 자료의 요구 등) ① 위원회는 제8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의 소속 부서장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나 변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소속 부서 등으로부터 관계 자료 등이 접수되면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실조사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1. 청구인,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진술하게 하는 방법
  - 2. 관계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
  - 3.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·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

- 4. 기타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하게 하는 방법
-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문답서(별지 제4호 서식)나 청취서 등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가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출석 통지(별지 제5호 서식)를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회피 및 기피) ① 위원회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 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.
  -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고충심사) ①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간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, 참석한 위원은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)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하며 그 밖의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한 서식에 따라통지한다.
  -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,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·결

- 정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취하)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.
- 제15조(결정)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한다.
  -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- 1. 시정요청 :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. '개선권고' 또는 '의견 표명' :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,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3. 기각 :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각하 :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, 사안이 종료된 경우,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
  - 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결정서의 송부 등) ①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득한 후 위원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  - ② 위원장은 결정서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 - ③ 총장은 제2항에 의하여 결정서를 접수한 후 그 심사결과를 청구 인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고충을 해소하는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제17조(재심청구 안내) 청구인이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과에 불복이

있어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고충처리 현황보고)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매년 1회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444호, 2018. 7. 16.>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]				
고충심사청구서				
1. 사건명 :	청구			
2. 청구인				
성 명	(한자)			
생 년 월 일	( 세)			
소 속				
직 급				
주 소	(우편번호 :			
전 자 우 편				
전 화 번 호	휴대전화 : 자택 또는 직장 : ※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수신 동의 여부 : 동의함( ), 동의안함( )			
3. 고충이유 : 별지로 작성 4. 입중자료 :				
	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
	20 년 월 일			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

위 청구인 ○○○ (서명 또는 인)

## 고충청구 보완요구서

- 1. 사 건:
- 2. 수 신:
- 3. 고충청구서 보완 요구

위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### <u>보</u> 완 사 항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

## 고충심사 관계자료 제출요구

수 신:

(경 유):

제 목 : 고충심사 관계자료 제출 요구

년 월 일 에 근무하는 (으)로부터 붙임과 같은 고충심사청구가 있어 이를 통지함과 아울러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9조 및「공무원 고충처리 규정」제7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200 . . .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
1. 청구이유 각 항목에 대한 변명서 및 그 입증 관계 자료

고충청구이유	청구이유에 대한 피청구인 주장	입증자료
	(별지로 작성 가능)	

2. 그 밖에 이 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 법규 및 자료

(위 청구 관계 자료에는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붙어야 하며, 각 청구 관계 서류 사본에 작성자의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.)

붙임 고충심사청구서 사본 1부. 끝.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

고충청취서(문답서)						
사 건						
	성명		직급		생년월일	
인적사항	소속					
	주소					
		ੂੰ ਹ	문 답 내 용	<u>}</u> -		
					[구서와 관·	권하여 🗌
□ 나무소(マ	진술장소)에	서 다음과	같이 자유	롭게 진술합	·니다.	
만 证 만 证						
이 청취서는 본인의 진술과 틀림없으며, 본인 의사대로 진술하였음을 확 인한 후 서명 날인합니다. 년 월 일						
			진술자 : 확인자 :	직급	성명 성명	(서명) (서명)

출선	長ス	서
=		

사 건

수 신

제 목 출석 통지

. . . 자로 에 근무하는 가(이)

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「공무원 고충처리 규정」 제7조에 따라 귀하와 면담하고자 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석 일시 : . . . : ( 요일)

출석 장소 :

년 월 일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

#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

사 건								
수 신								
제 목	고충심시	<b>가일의</b>	통지					
		. 자로		가(이	) 청구	한 고충	심사를	아래외
같이 선	심사하고지	ㅏ 「공무원	<u>고충</u> 차	리리 규견	정」제8	8조에 띠	나라 그	기일을
통지하	니 출석히	구시기	바랍니다	7.				
대리인	]을 출석	시킬 때어	는 반드	.시 대리	1인 지	정서를	지참해	주시기
바랍니	다. 사정	이 있어	출석할	수 없게	] 되어	서면으.	로 진술	·하려면
심사기	일 전에	서울과학	가기술대학	학교 교	육공무	·원보통고	2충처리	]위원호
에 도츠	함할 수 있	[도록 진·	술서를 져	베출해 -	주시기	바랍니다	<b>구</b> .	
	심사	일시 :	•		.(	요일)	:	
	출석	장소 :						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

# [별지 제7호 서식]

<u>심 사 조 서</u>				
사 건	청 구 인	피청 구인		
일 시	:	· 소		
위원회	위 원 장 : 위 원 : 관계 직원 :			
	청 구 인: 고충관련부서:			
	위원장 :	(서 명)		
	위 원:	(서 명)		
	위 원 : 위 원 :	(서 명) (서 명)		
	위 원 :	(서 명)		
	위 원:	(서 명)		
	위 원:	(서 명)		

주 소

결 정 서

사 건

청구인 성 명 (

소 속 직 급

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처리위원회는 심사를 거 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주 문

이 유